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6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 장경태·김진애·이용빈

정춘숙・최종윤・양정숙

오영환 • 박홍근 • 전혜숙

아수진비 · 김회재 · 류호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 서면 결의, 대리인 참석의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비대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5.06.25.)에 따르면 186개 조합 등 총회 의결방법 분석결과 전체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13.4%에 불과하고 총회참석자 대비 서면결의자는 79.4%를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조합원이 행사한 의결권의 진위여부(위·변조 등)를 판단하는 법률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임원의 불신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생업과 직장문제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자산 처분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인 참석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용하는 타 법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등이 있고,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기업의 주주총회도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추세로, 조합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도 무리가 없을 것임.

이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 거를 신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 용을 최소화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조합원은 <u>서면</u> 으로 의결권	⑤ <u>서면 또는 전자</u>
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적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바에 따라「전자문서 및 전자
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행사할 수 있다. <u>서면</u> 으로 의결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
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	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로 본다.	<u>이 항에서 같다)</u>
	<u>서면</u>
	<u>또는 전자적 방법</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